

윤리규정

목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나-A2-10-1
제 2 조 (적용범위)	나-A2-10-1
제 3 조 (준수책임)	나-A2-10-1
제 4 조 (주관부서)	나-A2-10-1

제 2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제 5 조 (공정한 업무수행)	나-A2-10-1
제 6 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나-A2-10-2

제 3 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 7 조 (고객중심 경영)	나-A2-10-2
제 8 조 (고객정보 보호)	나-A2-10-2
제 9 조 (고객가치 제고)	나-A2-10-2

제 4 장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

제 10 조 (반독점 금지)	나-A2-10-3
제 11 조 (담합)	나-A2-10-3
제 12 조 (자금세탁)	나-A2-10-3

제 13 조 (동반성장) -----	나-A2-10-3
---------------------	-----------

제 5 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 14 조 (기업가치 제고) -----	나-A2-10-3
제 15 조 (주주권익 보호) -----	나-A2-10-3
제 16 조 (내부자거래) -----	나-A2-10-3
제 17 조 (정보공개) -----	나-A2-10-4

제 6 장 사회에 대한 역할

제 18 조 (반부패) -----	나-A2-10-4
제 19 조 (준법) -----	나-A2-10-4
제 20 조 (안전보건) -----	나-A2-10-4
제 21 조 (환경) -----	나-A2-10-4
제 22 조 (조세) -----	나-A2-10-5
제 24 조 (사회공헌) -----	나-A2-10-5

제 7 장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

제 25 조 (윤리경영 조직 및 역할) -----	나-A2-10-5
제 26 조 (윤리경영 상담·제보 센터 운영) -----	나-A2-10-5
제 27 조 (제보자 보호) -----	나-A2-10-5
제 28 조 (교육) -----	나-A2-10-6
제 29 조 (서약서 작성) -----	나-A2-10-6
제 30 조 (윤리경영 실천규칙 운영) -----	나-A2-10-6

부 칙

윤 리 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이하 “ 회사 ”)는 SKMS의 경영철학을 토대로 구성원과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와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회사는 최고 수준의 윤리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을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회사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훌륭한 기업시민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약속은 회사 준법경영의 토대가 되는 이 윤리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윤리규정은 회사의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회사의 모든 이사, 임원 및 계약직, 시간제 정규직 포함 전 직원(이하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와 구성원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제 3 조 (준수책임) 본 윤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와 구성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 중 처해지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4 조 (주관부서)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구성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제 5 조(공정한 업무수행)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의 1 (금품 · 향응 · 접대)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 접대 및 개인적 편의를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의 2 (청탁) 구성원 본인 또는 제 3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제 5 조의 3 (이해상충)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5 조의 4 (허위보고) 구성원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지연 보고를 하여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 5 조의 5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구성원은 회사 자산을 횡령하거나 낭비해서는 아니되며 영업정보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구성원에 대한 존중)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제 6 조의 1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기업문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성희롱, 괴롭힘 등)를 하지 않는다.

제 6 조의 2 (차별)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 6 조의 3 (구성원의 안전)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제 7 조 (고객중심 경영) 고객의 의견과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구현한다.

제 8 조 (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관

런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제 9 조 (고객가치 제고)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장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

공정거래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의 준수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으로 상호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제 10 조 (반독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1 조 (담합)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사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다.

제 12 조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회사,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3 조 (동반성장)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 5 장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제 14 조 (기업가치 제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제 15 조 (주주권익 보호)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제 16 조 (내부자거래)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① 중요정보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재무성과(이익, 배당 등), 인수합병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② 구성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근거한 유가증권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시설 인근에 위치한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 ③ 제 3 자에게 중요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등 거래를 하도록 권유하지 않는다.

제 17 조 (정확한 회계 및 기록) 회사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 등 모든 기록은 회계기준 및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 6 장 사회에 대한 역할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사회규범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8 조 (부정부패 방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 ③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또는 기타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외국공무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해외합작 Partner 나 Agent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금지 및 관련법규 준수의무를 명시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9 조 (준법)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범죄활동(사기, 횡령, 사법방해 등)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 20 조 (인권)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인종·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1 조 (안전보건) 안전보건상의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축에 앞장선다.

제 22 조 (환경) 사업 전 영역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제 23 조 (조세)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제 24 조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

제 25 조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윤리경영 업무 및 제도를 지휘, 감독한다.

②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해당정보를 공개한다.

제 26 조(윤리경영 상담·제보센터 운영) 구성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는 본 윤리규정과 회사의 정책 및 절차위반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윤리경영 상담·제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상담·제보센터 운영

- 전화 : 02-723-2010
- 팩스 : 02-3700-8370
- 이메일 : skec.ethics@sk.com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2, SK 에코플랜트 윤리경영그룹
- 인터넷 : <https://ethics.sk.co.kr>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 'skecoplant 윤리경영' 검색

제 27 조 (제보자 보호) ① 회사는 제보자 보호규정에 따라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유

지하며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② 제보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어떠한 행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된다.

제 28 조 (교육) 회사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실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윤리규정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제 29 조 (서약서 작성) 구성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매년 문서 (별지서식 제 1 호)로써 서약하며, 협력회사는 계약 시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 30 조 (윤리경영 실천규칙 운영) ①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구성원이 본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천규칙 및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를 제정·운영한다.

② 당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협력회사를 위하여 협력회사 행동규칙을 제작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 년 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9 년 9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 년 7 월 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0 년 10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1 년 2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1 년 7 월 19 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23 년 6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